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5
----------	------

제출일자: 2017. 5. 11.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로 변경

나.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장)

다. 청소년 육성정책을 위한 지원내용 (안 제2장)

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촉·해촉 등에 관한 내용 (안 제3장)

- 청소년위원회 명칭을 「청소년기본법」과 동일하게 변경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마.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제 및 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안 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3. 17. ~ 4. 6.)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 육성정책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지역 신문·매스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 조정에 관한 자문
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활동에 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촉직 및 당연직에서 각

1명씩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을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5.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동협의회 위원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지원과장이 된다.

제13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공무원과 제14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3. 경찰서, 각급학교 및 청소년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② 지도위원이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동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 활동 및 상호협력 등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 동협의회는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은 동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등

제21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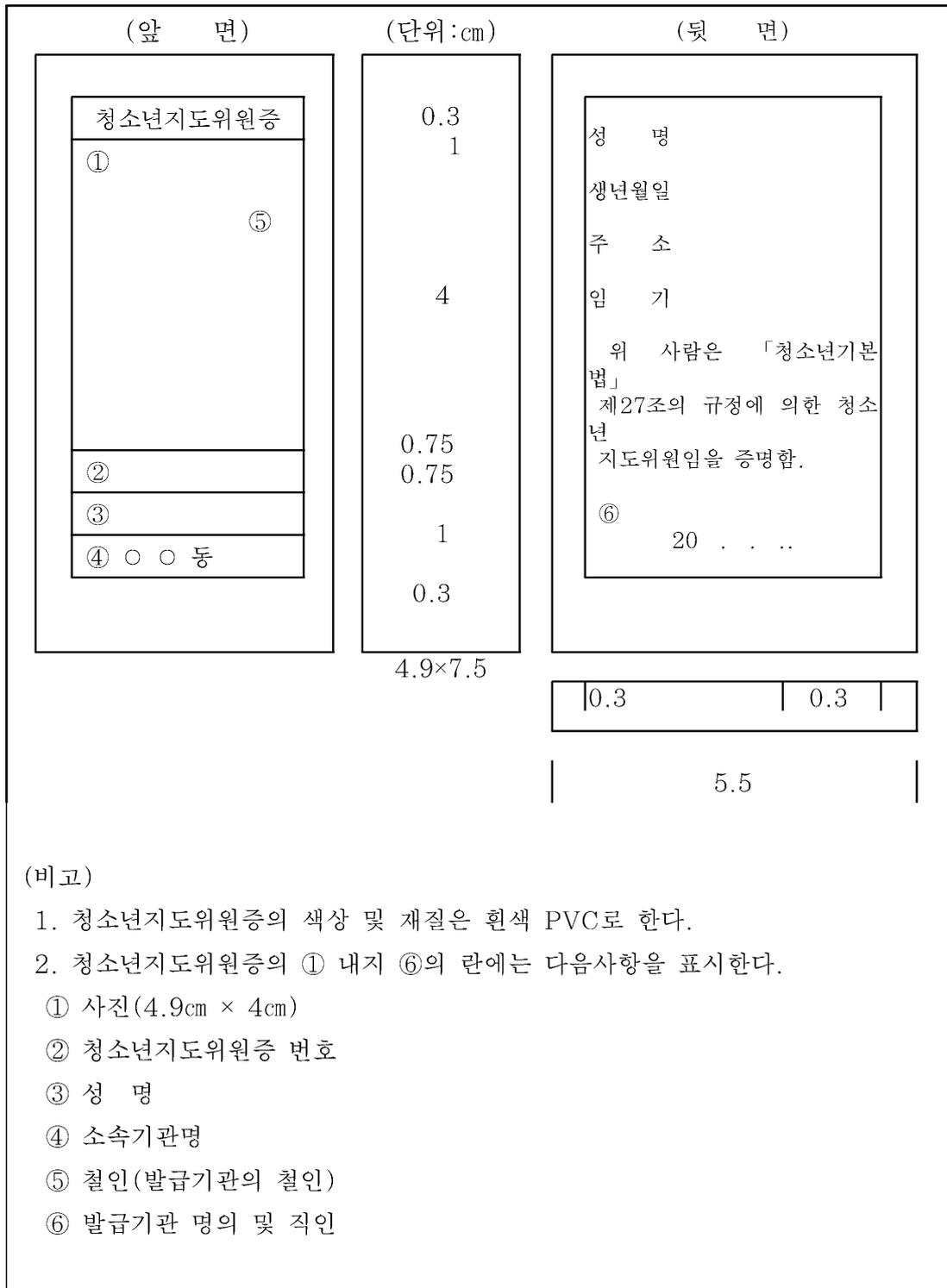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5항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2조와관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행정7급 정 다 운
연 락 처	02-450-7166

교육지원과장 김 정 애